

< 공모주 청약안내 >

1) 청약자격 및 한도

구 분

내 용

청약자격

1) 오프라인 청약: 청약개시일 전일 계좌 보유중인 고객 중 정기등급 프라임등급 이상(법인제외)

프라임등급 (정기등급)

직전 분기 자산평잔 1천만원 이상

[오프라인 청약 : 영업점 내방 및 유선청약]

2) 온라인 매체 (WTS,HTS,MTS,ARS) 청약시: 청약개시일 전일 계좌 보유중인 모든 고객

단, 청약기간 동안 계좌개설 한 고객은 청약불가 (영업점 및 온라인 전매제)

→WTS, HTS, MTS 청약 참여 시, 청약 약관 승인 후 청약 가능

→영업점, 고객감동센터, ARS 청약 참여 시, 청약 약관 미승인 계좌도 청약 가능.

단, 청약 약관 SMS 발송 후 청약 가능. 핸드폰 번호 미보유시 약관수신불가로 청약 불가.

(영업점 및 온라인 매체에서 청약 약관 승인 후 청약 가능)

우대
(200%)

1) 고객등급 HNW 등급 이상 개인고객 (CIF 기준)

HNW등급 (정기등급)

직전 분기 자산 평잔 1억원 이상 개인고객
(법인 제외, 법인은 한도 100%)

2) 연금보유고객(CIF 기준)

- 신연금펀드: 직전월 펀드 말잔 4 백만원 이상(예수금 제외)

- 구연금펀드: 직전월 말잔 4 백만원 이상

- 신연금펀드와 구연금펀드 동시 보유고객

(신연금펀드 말잔과 구연금펀드 말잔 합산 400 만원 이상)

3) 펀드보유고객(CIF 기준)

- 펀드 평가금액 직전 월 말잔 기준 5 천만원(CIF 기준) 이상 (단, 로보펀드의 경우 1 천만원 이상)

- 로보펀드는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펀드 중 당사가 지정한 펀드

- 펀드 평가금액 산정 시 예수금 및 연금펀드 제외

- 로보펀드 또는 펀드 평가금액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우대 적용

4) 개인형퇴직연금(IRP) 보유 고객 (CIF 기준)

-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직전월 말잔 4 백만원(CIF 기준)이상 (예수금 제외)

5) 타사대체 순입고 1천만원 이상 (직전월 포함 3개월 합산)

6) 국내 및 해외주식 거래 1천만원 이상 (직전월 포함 3개월 평균)

※ 우대고객 중 오프라인 청약 고객은 연금보유고객이라도 기본 청약자격(정기등급 프라임등급)이상 충족할 것

수수료

1) 공모주 청약 수수료

구분

공모주 청약 수수료

수수료 면제 대상

오프라인 (유선 포함)

3,000 원

고객등급 HNW 이상 또는
공모주 미배정 고객

온라인 (ARS 포함)

2,000 원

기타사항

공모주 미배정 고객 청약 수수료 면제

법인고객 청약 수수료 면제

배정기준 (일괄 청약방식)	1) 일반청약자 배정수량 절반 이상을 모든 청약자에 대해 '균등방식'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을 추첨으로 배정함. 이 경우 묶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2) 균등 배정 후 남은 수량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경쟁률에 따라 '비례방식' 배정. 비례 배정 결과 발생하는 1 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 사 6 입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배정하되,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기준에 의함. 배정 후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청약을 받은 대표주관회사는 자기계산으로 이를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함. 3) 다만, 청약 접수 결과 일반청약자 배정수량의 미달 최소화를 목적으로 양 방식의 배정비율간 사후적 조정 가능.
추가납입	대신증권을 통하여 청약에 참여하는 일반투자자는 청약 참여 당시, 균등배정 및 비례배정으로 인한 추가 납입 의사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추가납입 동의 시, 균등배정 물량 내에서 추가납입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추가납입 의사에 동의한 일반청약자에 한하여 별도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안내에 따라 추가납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는 경우 해당 수량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균등배정으로 인한 추가 납입은 청약종료일 익영업일 17 시에 순차적으로 자동출금 처리됩니다. 균등배정 수량 내 추가납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잔여주식 수량은 비례배정 수량에 합산하여 재배정합니다. 비례배정 후에도 추가납입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추가납입 의사에 동의한 일반청약자에 한하여 별도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안내에 따라 추가 납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는 경우 해당 수량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비례배정으로 인한 추가납입은 환불/납입일 13 시에 순차적으로 자동출금 처리됩니다. 비례배정 추가납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대신증권은 자기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게 됩니다.

2) 청약방법

구 분	방 법	청약시간
영업점 내방	당사 양식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 취급처에 청약	10:00 ~16:00
HTS	공모주/ELS청약 종합화면(TR 4771), 크레온(TR 1206)	
홈페이지	인터넷뱅킹 → 청약 → 공모주 청약신청 → 청약조회/취소	
모바일 (CYBOS Touch,, 크레온)	주식 → 청약/주식권리 → 공모주청약/취소	
유선청약	청약약정 등록 고객에 한하여 가능	
ARS청약	ARS 청약 메뉴: 6 번 청약서비스 → 2 번 공모주청약	

- ✓ 청약서 1 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 취급처에 청약합니다.
- ✓ 일반청약자는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은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자의 1 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 청약사무취급기관은 청약자의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실명자임을 확인한 후 청약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 ✓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9 조 제 5 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동법 시행령 제 132 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께서는 청약하시기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 ✓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 132 조에 의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표시는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추가납입 동의 시, 균등배정으로 인한 추가납입은 청약 종료일 익영업일 17 시에, 비례배정으로 인한 추가납입은 환불/납입일 13 시에 자동출금 처리됩니다. 청약 참여계좌의 출금가능금액이 추가납입금에 미달할 경우 납입처리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출금가능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청약단위

- ✓ 일반청약자는 대신증권(주) 본/지점을 통해 청약이 가능합니다.
- ✓ 대신증권의 일반고객 최고청약한도는 **120,000 주**이며, 우대고객의 최고청약한도는 **240,000 주**입니다.
- ✓ 청약단위는 아래의 표와 같으며,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의 하위 단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청약주식수	청약단위
10 주 이상 ~ 100 주 이하	10주
100주 초과 ~ 1,000주 이하	100주
1,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500주
10,000주 초과 ~ 50,000주 이하	1,000주
50,000주 초과 ~ 100,000주 이하	2,000주
100,000주 초과	5,000주

4) 환불

- ✓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 청약금 환불에 대한 통지는 대신증권(주) 홈페이지(www.daishin.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5) 기타사항

- ✓ 공모주 청약 규모의 급증으로 인해 상장일에 타사대체 요청이 과도하게 몰릴 경우, 타사대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공고는 향후 발행예정인 증권의 공모를 위한 단순 광고이며, 청약을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 ✓ 공모예정금액, 청약일/납입일 등 발행과 관련된 일반적인 조건은 청약일 전에 확정될 예정이며, 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발행사의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 되어있으니 투자여사를 결정하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

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주식청약증거금 등) ⑥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해당 공모주식 청약자에게 청약에 필요한 금전의 용자를 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일반청약자에게 복수 배정방식이 적용되어 각 방식에 따른 배정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 ✓ IPO 공모주식은 상장 초기 가격변동성이 크며,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격을 하회하여 투자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를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의 경우, 적격 청약을 제외한 나머지 청약에 대해서는 공모주식이 배정되지 않습니다.
- ✓ 특정 실명확인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투자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의 번호로 개설된 계좌의 경우, 중복청약 여부 확인이 불가하여 공모주 청약 참여가 제한됩니다.
- ✓ 청약내역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배정 및 환불금 정보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